



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

제105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 
제4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1.6. 21.)

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 
관리·운영 업무 위·수탁 협의 동의(안)

# 심 사 보 고 서



**창 원 시 의 회**  
(건설해양농림위원회)

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 
관리·운영 업무 위·수탁 협의 동의(안)

# 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21.  
건설해양농림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6. 2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6. 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05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개최 중 제4차  
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1. 6. 21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)

### 가. 제안이유

#### <서항지구>

- 2003. 12월 해양수산부 ⇔ 마산시 체결된 「서항·가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협약서」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서항지구(항만시설부지 포함)를 구.마산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최초 협의
- 2008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, 2010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2011년 서항지구 매립 면적을 112만㎡에서 63만㎡로 축소하고, 국토해양부는 서항 등 기존부두 22만㎡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해양신도시와 가포지구는 창원시가 개발하는 것으로 협약 변경
- 당초 구.마산시가 해양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가포신항 준설토를 활용 마산만 매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한 사항으로, 이후

시민단체반발 등에 따른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표류하고, 도시개발 사업에 국비지원 법적근거 없어 서항 등 기존부두를 국가재정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

### <구항 방재언덕>

- 구항 방재언덕 조성사업은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2005년 우리시에서 타당성 조사, 2007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, 2007년~2008년 문화재지표조사, 환경영향평가,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하면서 소방방재청을 통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종 재원지원불가 통보
  - 이후 마산해수청에 수차례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 ⇒ 사업시행
  - 실시설계 후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간이에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으며, 이때 상부공원시설 사업비가 제외되었으며, 마산청 공사 발주 내역서에도 상부시설은 최소한만 반영됨
  - 이에 따라 방재언덕 설치(2018년 준공, 매립공사 등) 후 친수공간 조성사업 별도 시행
- ⇒ 상기와 같이 우리시와 국가에서 협업하여 조성된 항만친수시설을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곧 시민들 품으로 되돌아가는 항만 친수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가) 사업개요

서항지구	구항 방재언덕
○ 위 치 : 서항부두 ~ 1부두 ~ 중앙부두 약 23km	○ 위 치 :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, 마산구항 일원
○ 사업기간 : 2017.06 ~ 2021.12	○ 사업기간 : 2020.06. ~ 2021.11.
○ 사 업 비 : 498억원(국비)	○ 사 업 비 : 64억원(국비)
○ 사 업 량 : L=2.3km, (A=216,468㎡)	○ 사 업 량 : L=1.1km, (A=58,000㎡)
○ 사업내용 : 방재언덕, 보도교, 체육시설, 광장, 휴게공간, 주차장, 편의시설 등	○ 사업내용 : 광장, 휴게공간, 주차장, 편의시설, 산책로, 해수취수시설 등

## 나) 그간 추진사항

- 서항·가포지구 개발에 관한 협약(해수부↔마산시) : '03. 12. 30.
- 서항·가포지구 개발에 관한 협약 변경(국토부↔창원시) : '11. 12. 30.
-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(서항지구, '16.9.27.준공) : '15. 05. 07.
- 공사 착공(서항지구) : '17. 06. 12.
-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준공 : '18. 12. 31.
- 공사 착공(구항 방재언덕) : '20. 06. 03.

## 다) 주요 협약 내용

- 위·수탁 관리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
- 위·수탁 관리비(국비 70%, 지방비 30%) 비율에 관한 사항

## 라) 향후계획
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21. 7.
- 서항지구 부분 준공(이관 및 관리) : '21. 7.
-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전체 준공 및 이관 : '22. 1.

## 마) 관련법규 및 지침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- 「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체결방법)
- 「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」 4-4-1-1, 4-4-1-2

## 바) 협약서 : 별첨

## 다. 시의회 주요 동의사항

위·수탁 관리비(국비70%, 지방비 30%)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위·수탁 협약 전반에 대한 동의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8호(지방의회의 의결)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으로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 친수 시설(서항지구 일부준공 : '21년 7월 준공예정) 준공 후 1개월 이내 시설물의 관리·운영 및 업무 위·수탁 협약을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주요 동의내용으로는 위·수탁 관리비(국비 70%, 지방비 30%)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위·수탁 협약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비율은 협약 해제 시까지 유지되므로
- 우리 시와 국가가 협업하여 조성한 항만친수시설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항만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※ 타 지자체 관리사례

시군	명 칭	면 적(㎡)	조성시기	관리방법	비 고
전 남 여수시	종포해양공원	27,640	2006년 6월	지자체 관리 (국비지원 없음)	국가무역항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